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1. 22.(화) 11:00 < 11.22.(화) 석간 >	배포 일시	2022. 11. 21.(월)
담당 부서 < 총괄 >	무역조사실 불공정무역조사과	책임자	과 장 김기호 (044-203-5880)
		담당자	서기관 윤지현 (044-203-5881)

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한다

- 「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 -
- 한-이스라엘, 한-캄보디아 FTA 세이프가드 협정 내용도 반영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 (장관: 이창양)는 **「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이 11.22(화) 국무회의를 통과**하였다고 발표하였다.

○ 금번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하는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자에게 부과하는 **과징금 산정과 납부 기준을 개선**하고,

○ '22.12.1일 발효되는 **한-이스라엘 FTA, 한-캄보디아 FTA**의 무역구제 관련 **협정내용을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에 반영**하였다.

□ **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**과 관련하여 **중소기업·영세사업자 등의 납부 부담을 경감**하기 위해 **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**한다.

○ 그간 **분할납부 신청은** 과징금이 **'3억원 이상'** 이어야 **가능**했으나 이를 **'3천만원 이상'** 으로 **낮추어,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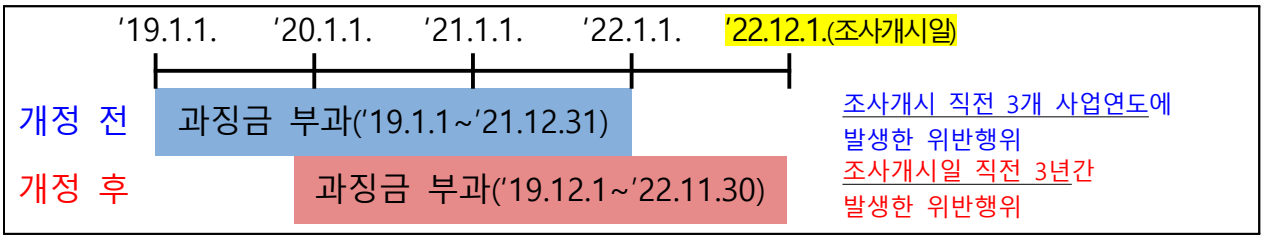
○ 보다 많은 **대상자들이 분할납부 제도*를 이용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**된다.

* 납부기한으로부터 4개월씩 3회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

□ 또한,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통상 **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활발**함을 감안하여, **조사가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을 부과**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○ 그간 **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산정시 제외**되었으나, **이를 포함**함으로써 **현실에 부합**토록 개선하였다.

<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부과대상기간 개정 전후 비교(예시) >



□ 한편 **한-이스라엘 FTA, 한-캄보디아 FTA 발효**(12.1일)에 맞추어 FTA에서 합의한 **세이프가드*** **관련 세부사항****도 **금번 개정안에 반영**하였다.

* 세이프가드(Safeguards): 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시, 동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역구제 제도

** 이스라엘은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5개 조항에, 캄보디아는 3개 조항에 반영

○ 금번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**이스라엘과 캄보디아를 상대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,** 해당국가가 **우리나라를 상대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,** 각 FTA에서 합의한 규정에 따라 **보다 완화된 방식*을 적용하게 된다.**

* 예시) 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시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점진적으로 조치 완화

○ 이를 통해 양 FTA 체결 당사국에서 보다 **원활한 무역 행위가 가능**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담당 부서	무역조사실 불공정무역조사과	책임자	과 장	김기호 (044-203-5880)
		담당자	서기관	윤지현 (044-203-5881)
	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해권 (044-203-5850)
		담당자	사무관	김현아 (044-203-585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**

□ 추진 배경

○ **(과징금)**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**과징금 부과의 합리성 제고 및 납부기준 완화**를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

○ **(한-이스라엘 FTA, 한 캄보디아 FTA)**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무역구제 관련 협정의 내용을 **국내법령에 반영**

□ 개정 주요내용

<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제도 관련 >

① **과징금 대상기간 및 산정방식 변경**(안 제6조제1항, 별표1 제1호)

- 과징금 **대상기간을 '조사개시 직전 3개 사업연도'에서 '조사개시일 직전 3년'으로 변경**

 *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과징금에 포함

- 과징금 산정시 **'연평균 거래금액'을** 사용하던 것을 **'거래금액 합계'로 변경**하고, 이에 따라 **부과율을 '30%'에서 '10%'로** 조정

 * (개정 전) 조사개시 '직전 3개 사업연도'의 '연평균 거래금액' × '30%'
 (개정 후) 조사개시일 '직전 3년'의 '거래금액 합계' × '10%'

② **과징금 납부기한 확대**(안 제8조제2항) 및 **분할납부 등의 기준 완화** (안 제9조제1항)

- **납부기한(현행 20일)**을 현행 이의신청 가능기간(30일)과 동일한 **30일 이내로 변경**

- **분할납부 허용 및 납부기한 연장 금액기준**을 **'3억원 이상'에서 '3천만원 이상'으로 완화**

< 한-이스라엘 FTA, 한- 캄보디아 FTA 후속조치 관련 >

(안 제24조제1항, 제5항5호, 제12항, 제16항 및 제24조의2조제1항)

① **FTA 세이프가드조치** 및 **점차적 조치완화*** 대상국에 **이스라엘, 캄보디아** 포함

*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

② **잠정FTA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이 있을** 시, 그 신청내용의 입수 방법 등을 **관보 게재**하여야 하는 대상국에 **이스라엘, 캄보디아** 포함

③ **동일상품**에 대해 **세이프가드 재적용이 불가**한 대상국 및 **글로벌세이프가드조치 시 재량적 적용배제가 가능**한 대상국에 **이스라엘** 포함